

# 建築設計審議制度의 背景과 그 方向

建設部 技術審查官室

특히 금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익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재확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1. 배 경

건설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을 심의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내실화하여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국제경쟁력 배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89년 5월 1일 공포된 건설기술관리시행령에서는 우선 설계심의대상공사를 아래와 같이 축소 조정하였다.

우선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종전의 1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3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하여 건축공사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종전의 5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대응토록 함은 물론 지방위원회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각지방의 특색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심의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익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재확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밖에도 이제까지는 사실상 설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여 당해 건축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설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역사성이나 문화예술성 또는 공익성이 높은 건축공사는 필요에 따라 각분야 사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하는

제도가 틀을 잡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설계심의의 제도는 건축사가 설계한 창작물을 다시 심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행정으로 인식되는 경향 또한 없지않다. 그러나 다년간의 설계심의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설계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사항이 설계심의 과정에서 많이 적출되고 있고 직접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전문가의 아이디어도 많이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때로는 현실적이면서도 효용성이 높은 대안이 개발되어 설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볼때, 설계심의는 규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助長行政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처리기간이 심의를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시행이 설계심의로 인하여 그만큼 지연되는 것으로 간파하는 경향도 있으나 중앙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설계심의는 건축허가의 수속중에도 설계심의를 병행할 수 있기때문에 공사의 시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는 발주자의 의지가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왔다. 물론 공공건물에서도 발주관서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직이 건축공사 발주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건설부에서는 이와같은 공공의 대형건물들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설계심의를 발전지향적인 행정으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2. 방 향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대략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 건축계획의 적정성

### 설계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

- 주차장의 면적부족 및 주차장 배치계획의 불합리
- 공연장등 다중의 출입구에 화강석 물갈기로 마감하는 사례
-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Ramp계획의 누락
- 건축음향계획의 불합리
- 평면계획상 동선처리의 미흡
- 기초구조계획시 부동침하고려 미비
- Deep Beam에 대한 보강방법의 불합리
- 내진구조계획 불합리

- 건축구조의 안정성
- 적용공법의 타당성
- 기계설비의 계획 및 시공의 적정성
- 전기설비의 계획 및 시공의 적정성

설계심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다.

다만,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만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의와 실시설계심의를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설계단계에서 배치와 평면계획등 기본적인 항목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분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설계심의시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없어 실시설계심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심의는 면제되고 있다.

이제까지 설계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향후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를 감안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 주차장의 면적부족 및 주차장 배치계획의 불합리
- 공연장등 다중의 출입구에 화강석 물갈기로 마감하는 사례
-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Ramp계획의 누락
- 건축음향계획의 불합리
- 평면계획상 동선처리의 미흡
- 기초구조계획시 부동침하고려 미비
- Deep Beam에 대한 보강방법의 불합리
- 내진구조계획 불합리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발주기관에서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심의요청

심의요청은 해당공사의 심의요청서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는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요청 당시에는 우선 1부만을 제출하여 보완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이 끝난후에 필요한 부수만을 작성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서류작성의 중점을 피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였다.

####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정(건설부훈령 제787호)에 의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토질조사보고서 및 각종의 설계도면으로 구성된다.

#### 다. 심의의결

심의의결은 아래와같이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심의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의와 실시설계심의를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설계단계에서 배치와 평면계획등 기본적인 항목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분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